

82 (第18回-第4次)

<p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</p> <p>제2조본문중 “15,661명”을 “15,760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2호중 “4,881명”을 “4,980명”으로 한다</p> <p>표1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중 “16,369명”을 “16,468명”으로 하고, 동표의 2. 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정원란중 “4,881명”을 “4,980명”으로 한다.</p> <p>표2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중 “16,019명”을</p>	<p>“16,118명”으로 하고, 동표의 2. 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정원란중 “4,881명”을 “4,980”명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별표중 보건복지국(보건위생과)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주 관 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사 무 명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근 거 법령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수임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10px; vertical-align: top;"> 보건복지국 (보건위생과) </td><td style="padding: 10px; vertical-align: top;"> 1. 이·미용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【다만, 1981.11.30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와 1981.12.1 이후 이·미용사 자격인정 전문대학 (또는 동등학력 인정자) 및 고등기술학교졸업자종 졸업당시 주소가 타 시·도로 되어 있던 자가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】 가.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나. 면허취소 및 면허의 정지 </td><td style="padding: 10px; vertical-align: top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○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</td><td style="padding: 10px; vertical-align: top;"> 구 청 장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령	수임기관	보건복지국 (보건위생과)	1. 이·미용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【다만, 1981.11.30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와 1981.12.1 이후 이·미용사 자격인정 전문대학 (또는 동등학력 인정자) 및 고등기술학교졸업자종 졸업당시 주소가 타 시·도로 되어 있던 자가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】 가.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나. 면허취소 및 면허의 정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○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	구 청 장	<p>별표중 교통관리실(운수물류과)란의 제1호의 타목·파목·하목 및 더목을 삭제하고, 같은 표 같은란같은호중 거목 및 러목과 같은표같은</p> <p>란 제18호·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표같은란의 제6호 내지 제17호는 이를 삭제한다.</p>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령	수임기관						
보건복지국 (보건위생과)	1. 이·미용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【다만, 1981.11.30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와 1981.12.1 이후 이·미용사 자격인정 전문대학 (또는 동등학력 인정자) 및 고등기술학교졸업자종 졸업당시 주소가 타 시·도로 되어 있던 자가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】 가.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나. 면허취소 및 면허의 정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○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	구 청 장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주 관 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사 무 명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근 거 법령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수임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10px; vertical-align: top;"> 교통관리실 (운수물류과) </td><td style="padding: 10px; vertical-align: top;"> 1.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거.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, 회수 러.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·법 제9조·법 제13조제7항·법 제18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18. 자동차 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(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) </td><td style="padding: 10px; vertical-align: top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법 제27조, 동법시 행령 제7조제1항·제2항·제4항 ○ 동법 제52조(동법시 행령 제17조제2항제24호) ○ 자동차관리법 제72조 </td><td style="padding: 10px; vertical-align: top;"> 구 청 장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령	수임기관	교통관리실 (운수물류과)	1.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거.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, 회수 러.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·법 제9조·법 제13조제7항·법 제18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18. 자동차 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(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법 제27조, 동법시 행령 제7조제1항·제2항·제4항 ○ 동법 제52조(동법시 행령 제17조제2항제24호) ○ 자동차관리법 제72조 	구 청 장	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령	수임기관						
교통관리실 (운수물류과)	1.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거.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, 회수 러.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·법 제9조·법 제13조제7항·법 제18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18. 자동차 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(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법 제27조, 동법시 행령 제7조제1항·제2항·제4항 ○ 동법 제52조(동법시 행령 제17조제2항제24호) ○ 자동차관리법 제72조 	구 청 장						